

| | |
|--------------|--------------------------|
| 의안번호 | 제 370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09년 6 월 일 (제 281 회) |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09년 6월 2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안

| | |
|----------|-----|
| 의안 번호 | 370 |
|----------|-----|

제출연월일 : 2009년 6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의 정의(안 제2조제3호)
- 부조리 신고자(안 제3조)
- 부조리 신고자의 성실 의무(안 제5조)
- 부조리 신고방법(안 제6조)
- 부조리 신고자의 보호(안 제10조)
-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14조)
- 부조리 신분보호 등 위반 시 벌칙(안 제1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 기관, 시·군과 소속 기관 또는 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도,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소속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도와 시군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라.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 마. 「충청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부조리의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도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도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가 7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부조리 신고내용을 제출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에의 처리)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조사결과를 감사·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

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직자인 신고자가 도지사에게 도내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전출 등 인사교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접수 또는 이첩 받은 기관의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협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지급대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제2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3조(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10조2에 따른 충청북도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공직부조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에 규정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6조(환수)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의 보상금의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벌칙) 각 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자체 징계의결양정규칙 등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
|------------------------|---|
| 조례 제2조 제3호 가목 관련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 조례 제2조 제3호 나목 관련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또는 환수 결정금액의 10퍼센트 이내 |
| 조례 제2조 제3호 다목 관련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
| 조례 제2조 제3호 라목 관련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 |
| 조례 제2조 제3호 마목 관련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 |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